

2026년도 바이오화학소재 수요맞춤형 기업지원사업 (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맞춤형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) 애로기술 및 시제품 제작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

2026년도 울산광역시가 바이오화학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애로기술 및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에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4월 10일

울산광역시장, 울산테크노파크원장

1. 지원개요

- **(프로그램명)** 첨단장비를 활용한 애로기술 및 시제품제작지원
- **(지원규모)** 패키지(애로기술지원+시제품제작지원) 2개사
 - ① 애로기술지원
 - 반응열 연구를 통한 공정위험성평가 및 경제성평가 컨설팅
 - 공정 Design 및 양산시설 구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 컨설팅
 - ② 시제품제작지원
 -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제반비용(장비사용료, 분석평가비 및 재료비만 해당)
 - 최대 8,000천원, 기업부담금 10%(800천원) 이상(VAT 제외)
- **(지원기간)** 2026. 5. ~ 2026. 11. (7개월)

2. 지원대상

- **(지원자격)** 울산지역 내에 소재한 관련기업*으로 바이오화학소재산업 전·후방 연관 제품(기술) 분야**로 신청 가능

* 검토기준 : 울산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, 공장 등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
** 한국산업분류코드(KSIC) : C17, C19, C20, C21, C22

(이외의 경우 전후방연관기업임을 입증하는 매출처 계산서,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)

○ **(신청자격 요건)**

- 울산지역 소재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바이오화학소재 관련 중소기업, 중견, 대기업

※ (우선지원) ¹순위창업(7년 이내) 또는 이전사업자*, ²순위중소기업

* 이전사업자 : '26년 1월 1일부터 지원사업 선정시까지 울산지역 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자

○ **(신청제외 대상)**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- 참여기업, 참여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제출서류 목록에 제시된 필수서류가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기업의 부도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
 -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 잠식
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
3. 세부 지원내용

○ (세부 프로그램 및 내용)

산업분야	자원유형	프로그램명	세부 지원 내용
바이오 화학소재	패키지형 기술지원	①애로기술 지원 ②시제품제작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첨단장비 활용지원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(8,000천원/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정 및 분석평가 장비 활용 지원 -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 제반비용 지원 - 수혜기업 사업비 부분 매칭 (지원금의 10% 이상) ○ 첨단화학기술지원단 연구개발, Pilot Plant를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Lab에서 개발된 공정에 대한 실증화 평가 지원 - 품질 개선공정의 상업화를 위한 공정의 엔지니어링 데이터 수집 지원 - 공정 실증화 평가를 위한 신뢰성 확보 전문 시설 제공 (Pilot plant) ○ 바이오화학소재의 품질 개선을 위한 공정연구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이오화학기업이 구축하지 못한 품질 개선을 위한 첨단 연구, 공정 개발 장비 지원 - 공정개선 개발 과정에 적용가능한 고가 장비의 근접 신속 지원, 장비운영 전문가의 기술지도 병행

4. 평가방법 및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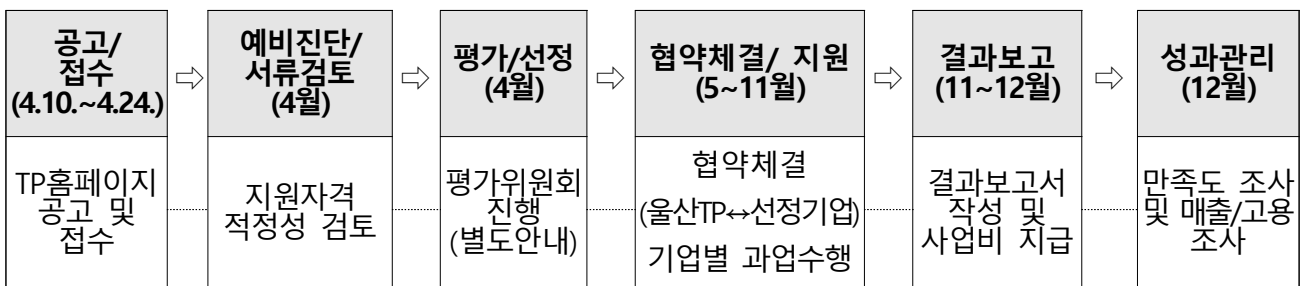
- **(평가방법)**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예비진단(필수) 및 제출서류 사전 검토 → 면담/현장실태조사(선택) → 선정평가(필수)
- **(평가항목)** 필요성, 적정성, 타당성, 기대효과, 기타, 우대배점

구 분	위원구성	평가항목
서류평가	- 바이오화학소재와 관련된 평가위원(5인 내외)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의 필요성(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등) - 사업계획의 적정성(목표달성의 구체성 등) - 타당성(지원내용 등의 구체성 등) - 파급효과(지원제품의 사업화 등) - 기타(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등) - 우대배점(5점, 창업 7년 이내, 울산지역 중소기업)

- **(선정기준)** 외부전문가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점수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
 - 평가위원별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, 우대 배점을 포함하여 계산함
 -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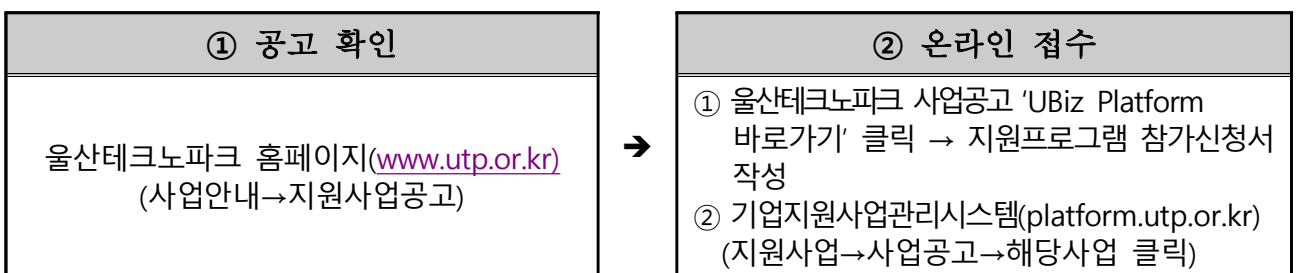
5. 추진일정

- 공고기간 : 2026년 4월 10일(금) ~ 2026년 4월 24일(금) 18:00



※ 상기 일정은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접수기간 및 방법



구 분	내 용									
접수기간	○ 2026년 4월 10일(금)~2026년 4월 24일(금) 18:00									
접 수 처	○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(platform.utp.or.kr)에 온라인 등록									
접수절차	① (회원가입) 전산 접수 전 회원 가입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회원가입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승인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과제 신청</td> </tr> <tr> <td>본인인증, 기초정보입력, 필수서류 제출</td> <td>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</td> <td>신청서 및 서류 제출 업로드</td> </tr> <tr> <td>신청자</td> <td>울산 TP 시스템 관리자</td> <td>신청자</td> </tr> </table> <p>-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 절차 필요 * 회원가입 절차에 1~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-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, 최근 3년 재무제표,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* 처음 가입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- (승인 및 시스템 담당) 기업지원단 최명현 연구원, 052-219-8678</p> </div>	회원가입	승인	과제 신청	본인인증, 기초정보입력, 필수서류 제출	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	신청서 및 서류 제출 업로드	신청자	울산 TP 시스템 관리자	신청자
	회원가입	승인	과제 신청							
	본인인증, 기초정보입력, 필수서류 제출	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	신청서 및 서류 제출 업로드							
	신청자	울산 TP 시스템 관리자	신청자							
	② (온라인 등록) 신청기업 로그인 → 공고 현황 → 동 사업 공고 선택 →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									
③ (파일 업로드)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,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(platform.utp.or.kr) 업로드 - 사업계획서는 HWP파일과 PDF파일(칼라) 함께 제출 -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- 1개의 압축파일 업로드 가능 * (사업계획서 외 서류) 전산 오류 발생했을 시 오프라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하나, 사업 신청 기록은 반드시 있어야함(신청기업 현황 확인 요망)										
④ (최종제출)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										

7. 제출서류

번호	제출서류	부수	비고
1	사업자등록증	1	필수
2	법인등기부등본	1	필수
3	사업신청서	1	필수
4	개인(기업) 정보제공 동의서	1	필수
5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	필수
6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1	필수
7	중소기업 확인서	1	해당시
8	최근 3년간 기업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• 창업 3년 미만기업 :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•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	1	필수

8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선정 완료 후 성과관리 기간 동안 지원기관의 요청자료 성실히 대응 필수
- 시제품제작 지원의 결과평가 시 실패일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
9.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

-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제34조(제재처분의 사후관리)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본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(단, 협약기간 내 무협의를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 사업비 사용가능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담금을 부과
 1. 평가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
 2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
 3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
- | |
|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,변조,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.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.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.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. 그 밖에 국구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|
|---|

4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**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**

10. 이의신청

○ 이의신청의 범위

- (이의신청 가능 사항)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,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,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

*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

- (이의신청 불가 사항) 선정결과 통보, 평가위원 선정, 사업비 결정, 평가규정 및 절차, 평가방식(서류/발표/현장) 등에 이의가 있는 때

○ 이의신청 방법(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)

- (신청기한)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* 이내

* 5일 :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

- (제출서류) 선정결과 통보공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첨단화학기술지원단으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
- (작성방법) 신청기업(기관)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, 통보일, 평가결과,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

- (유의사항)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,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

11. 관련법규
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.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 -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 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 -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 관리 지침

12. 문의처

산업분야	프로그램명	담당자명	전화번호	이메일
바이오화학소재	첨단장비를 활용한 애로기술지원 및 시제품제작 지원	심정후 연구원	052-219-8706	jhshim@utp.or.kr